거창군읍·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~54

제출일자	2004. 11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□ 개정이유

○ 농지를 취득할 시 농지관리 위원에게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농지법시행령 제8조『농지취득 자격의 확인』사항이 2002. 12. 31자로 삭제된 사항과,

○ 상위법인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○ 농지를 취득할 시 농지관리 위원에게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농지법시행령 제8조가 삭제되어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4조제3호 및 제8조를 각각 삭제 하고자함.(안 제4조제3호 및 제8조 삭제)

○ 농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상위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협조 및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조사 협조 및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한 조례 제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삭제함.(안 제4조제4호 및 제5호)

○ 농지법 제47조제4항에 농지의 전용허가 및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 제10조제4항에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(안 제10조제4항)

□ 개정근거

○ 농지법 제47조제4항 및 영 제49조제1항
○ 농지법시행령 제8조(2002.12.31자 삭제)
○ 지방자치법 제15조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읍·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읍.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 하고, 같은 조 제6호중 “법령”을 “기타 다른 법령”으로 한다.

제8조 및 제10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	**제4조** (위원회의 기능) -----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지역안의 농지취득자격확인	**3. <삭 제>**
4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실태조사 협조 및 처분대상 농지의 확인	**4. <삭 제>**
5.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업의 처리	5. **<삭 제>**
6.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	6. 기타 다른 법령----------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제8조 (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)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1999. 9. 11)	**제8조 〈삭 제〉**
제10조 (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) ①~③ (생 략)	**제10조** (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) ①~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장은 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1998. 5. 7 조례 제1474호)	**④ <삭 제>**